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1. 10. 8.>

#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 ] 등록 [ ] 변경등록 신청서

※ 제5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총5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공동농업경영체 지정 등록번호	처리기간 14일
------	------	-----------------	-------------

## 1. 일반현황

형태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합명 [ ]합자 [ ]유한책임 [ ]주식 [ ]유한 )    [ ]농업협동조합    [ ]기타							
① 공동농업 경영체현 황	공동농업경영체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연도		참여 농업경영체수		전화번호		팩스	
	사무소 소재 지	본점	(마을명: )					
		분점	(마을명: )					
			(마을명: )					
주요 사업 [ ]생산 [ ]가공 [ ]유통 [ ]수출 [ ]농업서비스 [ ]관광·휴양 [ ]그 밖의 사업 [ ]마을법인								

②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③ 주요 참여 농업인 현 황	성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성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④ 출자규모	구 분	출자자 수(명)	출자액(만원)
						농업인		
						비농업인		
						계		

## 2. 추정 소득(전년도 연간)

(단위: 만원)

⑤ 농업소득	⑥ 농업 외 소득

3. 공동경영 농지 면적(전년도 연간)

(단위: ha)

⑦ 공동경영 농지 현황					
총 면적	공동육묘	공동이앙	공동방제	공동수확	공동출하

4. 가축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 ※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⑧ 사육시설 현황				⑨ 사육정보	
소유자	사육시설 소재지	소재지 면적(m <sup>2</sup> )	시설면적(m <sup>2</sup> )	사육품목	사육규모(마릿수/군/m <sup>2</sup> )

5. 농산물의 생산·유통 및 가공(작성기준일 : 전년도 연간)

(단위: m<sup>2</sup>, kg, 마릿수, %, 만원)

	⑩-1 주요 품목	⑩-2 재배면적(사육규모)	⑩-3 생산량	⑩-4 판매량	⑩-5 판매금액	⑩-6 판매처별 비율					⑪ 가공 판매	품목	판매금액
						정부공공비축	농협	민간도정가공업체	직거래	기타			
⑩ 생산 유통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수집상	직거래	기타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수집상	직거래	기타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수집상	직거래	기타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수집상	직거래	기타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민간계통출하	유통업체	기타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민간계통출하	유통업체	기타			

5. 농산물의 생산·유통 및 가공(계속)

(단위: m<sup>2</sup>, kg, 마릿수, %, 만원)

⑩	⑩-1 주요 품목	⑩-2 재배면적(사육규모)	⑩-3 생산량	⑩-4 판매량	⑩-5 판매금액	⑩-6 판매처별 비율					⑪	품목	판매금액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수집상	직거래	기타			
생산유통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수집상	직거래	기타	가공 판매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수집상	직거래	기타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수집상	직거래	기타			
						도매시장	산지경매	유통업체	직거래	기타			
						도매시장	산지경매	유통업체	직거래	기타			
						도매시장	산지경매	유통업체	직거래	기타			
						도매시장	산지경매	유통업체	직거래	기타			
						도매시장	산지경매	유통업체	직거래	기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3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 ] 등록 [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2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 운영계획</li> <li>2. 법 제2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경영 내부규약</li> <li>3. 참여 농업인의 성명 및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내역</li> <li>4. 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출자자 수와 출자액 내역</li> </ol>
------	--

###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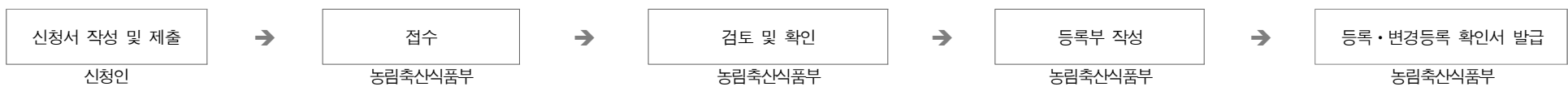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농촌 사회 안정망 지원, 융자·보조금 등의 관리 등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한 농업경영정보의 등록·변경등록, 들녘경영체육성사업 등 공동농업경영체 지원사업의 정보, 그 밖에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들녘경영체육성사업 등 공동농업경영체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심사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의6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법인현황 등 농업경영정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아 사후관리 등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공동농업경영체 지정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들녘경영체육성사업 등 공동농업경영체 지원사업의 재정 지원이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제공·활용 동의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 처리절차



작성방법

※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만 적거나 변경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1. 일반현황 : 공동농업경영체 일반현황과 관련한 사항을 등록합니다.

- ①란은 공동농업경영체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연도, 참여 경영체수, 연락처, 사무소 소재지를 적습니다.
  - \* 전화번호, 팩스 및 전자우편은 해당 공동농업경영체에서 이용하는 것을 적되, 공공농업경영체가 소유·이용하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사용하는 것을 적습니다.
  - \* 주요사업은 정관 등으로 정한 주요사업에 해당하는 [ ]칸에 √표시를 하되, 중복선택 가능합니다.
  - \* 체험마을 등 마을단위로 농업법인을 만든 경우에는 마을법인에 √표시 합니다.
- ②란은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민등록지 주소를 적습니다.
- ③란은 공동농업경영체 참여하는 주요 농업인의 성명 및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를 적으며, 전체 참여 농업인의 성명 및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는 문서 및 전자파일로 별도 첨부합니다.
- ④란은 공동농업경영체 참여자의 출자내역에 대해서 농업인과 비농업인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 추정 소득 : 전년도의 해당 소득금액을 적습니다.(작성기준일 준수)

- ⑤란은 전년도의 농업소득 총액을 적습니다.
- ⑥란은 아래의 농업 외 소득금액 총액을 적습니다.
  - 어업, 농산물 가공업, 농업서비스, 제조업 등 기타 산업 종사를 통해 전년도에 얻은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 농업 외 산업 종사로 지급받은 임금 및 다른 농가에 고용되어 지급받은 소득을 적습니다.
  - 임대수입(농지, 대지, 시설물, 대농구 등), 이자·배당수입, 유가증권 매매차익 등의 금액을 적습니다.
  - 농업보조금, 실업수당, 산재보험금, 기초연금, 같이 살지 않는 가족 또는 친인척 등 다른 가구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용돈·생활비 등
  - 경조수입(축의금, 조의금 등), 퇴직일시금, 사고보상금, 이주민 주거대책비 일시금, 세금 환급금, 사례금 등 비정기적으로 정부, 공공기관, 다른 가구 등으로부터 얻은 소득금액

3. 공동경영 농지 면적(작성기준일 : 전년도 연간)

⑦란은 공동농업경영체가 공동농업경영체 운영계획에 따라 농지의 공동이용계획에 적용받는 농지면적(총 면적)과 공동육묘, 공동이양, 공동방제 등이 시행된 개별 농작업의 면적을 작성합니다.

4. 가축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 :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⑧란은 가축 사육시설의 소유자, 소재지, 공부상 면적, 시설면적을 적습니다.
- ⑨란은 사육하고 있는 가축 및 신청일 현재의 사육규모(마릿수/군/㎡)를 적습니다(다만, 신청일 이전에 일시적으로 출하하여 가축이 없는 경우 연중 평균 마릿수를 기재하되, 부화업인 경우는 1회 평균 입란 개수를 기재합니다).

5. 농산물의 생산·유통 및 가공(작성기준일 : 전년도 연간)

- ⑩란은 전년도에 유통·판매한 농산물의 실적입니다.
- ⑩-1란은 전년도 생산품목, 유통·판매 등 취급 농산물의 품목, 주요 서비스 종류를 적습니다.
- ⑩-2란은 ⑩-1란에 기재한 주요 품목의 전년도 총 재배면적을 적습니다. 재배 면적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빈칸으로 둡니다.
- ⑩-3란은 ⑩-1란에 기재한 주요 품목의 전년도 총 생산량을 적습니다. 생산 실적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빈칸으로 둡니다.
- ⑩-4란은 ⑩-1란에 기재한 주요 품목의 전년도 총 판매량을 적습니다.
- ⑩-5란은 ⑩-1란에 기재한 주요 품목의 총 판매금액을 만원 단위로 적습니다.
- ⑩-6란은 ⑩-5란에 기재한 주요 품목의 총 판매금액 중 판매처별 점유비율을 백분율(%)로 적습니다.
- ⑪란은 전년도에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하여 판매한 품목의 명칭과 연간 판매금액을 만원 단위로 적습니다.